번호			국가공간정보기본법
			기출문제: 2024년 제134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,
			제1교시 9번 / 하루 한 문제 42일차, 단답형 10점
			과목, 학습 분야: 관련 제도, 실무 / 세부 유형: 공간정보 법령(학습용 분류)
			1. 개요와 주요 용어
			1) 목적(제1조):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
			종합적 활용, 관리 → 국토, 자원의 합리적 이용
			2) 정책, 체계, 유통, 보호를 규정하는 기본법
			(측량, 지적: 공간정보관리법 / 산업 육성: 진흥법)
			3) 공간정보(제2조): 공간상 객체의 위치정보 및 의사결정 정보
			4) 관리기관: 공간정보 생산, 관리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
			공공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
			5)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: 기본공간정보 DB 기반 통합, 연계
			2. 추진체계(제2장)
			
			<위원회 심의로 확정하는 두 단계 계획>
			1) 위원회(제5조): 국토교통부, 위원장 장관, 30인 이내
			2) 기본계획(제6조): 5년마다, 기관별 기본계획 종합

번호			3) 시행계획(제7조): 매년, 중앙행정기관, 시·도지사 계획 통합
			3. 국가공간정보기반 조성(제4장)
			1) 기본공간정보(제19조): 지형, 해안선, 행정경계, 도로,
			철도 경계, 하천경계, 지적, 건물 → 선정, 고시, DB 통합
			2) 공간객체등록번호(제20조), 표준화, 준수 의무(제21~23조)
			3)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(제24조), 국가공간정보센터(제25조)
			4. 구축, 활용과 보호(제5~6장)
			1) 중복투자 방지(제29조): 사전 검토, 국토부 통보, 시정 요구
			2) 목록정보(제30조): 내용, 특징, 정확도 등 메타데이터
			3) 공개(제33조), 복제, 판매(제34조)
			↔ 보안관리규정(제35조, 국가정보원장 협의), 보안심사
			4) 실무 연계: 기본계획(제7차 2023~2027) → 산업 진흥계획
			(진흥법 제4조), 기관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
			표준, 목록정보, 보안관리 준수가 유통의 전제
			※ 학습용 예시, 공식 채점기준 아님. 2026. 1. 2. 시행 법률 기준.
			끝